

의안번호	2210740
의 퇴 인	전진숙의원
회 답 일	2025. 7. 16.
추계번호	25C313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의10(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사망사건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제2항), 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3항) 1. 변호사 2.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3.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사자 4. 사회복지사 또는 가정폭력 담당 공무원 5. 의료기관 종사자 6. 그 밖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의10(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	※ 안 제4조의8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은 위원회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

2. 상세 사유

□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의10)

-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안 제4조의8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안 제4조의10제4항에 따르면 검토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부족하여 수당 지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4년까지의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인원
			구속	불구속	
'21년	46,041	53,985	410	15,954	24,867
'22년	44,816	52,146	496	14,501	25,319
'23년	44,524	55,176	578	16,434	21,146
'24.6월	19,806	24,566	275	7,469	8,965

자료: 경찰청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